

I

신선농산물 (딸기) 통관 일반사항/ 주의사항

1. (신선농산물/딸기) 일반사항

○ 검역

- 베트남에서 한국의 딸기를 수입, 판매하는데 가장 큰 장애는 검역 규제임
- 딸기는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식품검역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농산물 품목에 속해 있으며, 농산물 검역은 각 지역 식품 보호국에서 실시하며 기준을 통과한 상품에 대해서는 검역 통과 증명서를 발급함
- 농산물의 검역은 다음 공문서에 준하여 실시됨
 - 검역 대상 수출입 통관과 수입 후 검역 순서, 수속 규제에 대한 33/2014/TT-BNNPTNT(2014년 10월 30일)
-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이 고시한 2515/QP-BNN-BVTV 이 결정한 식품 검역 강제 목록에 딸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관, 유통 전에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함

○ 통관에 대한 규정

- 상품에서 검역용 샘플 채취
- 검역 당국에 해당 서류와 샘플을 제출
- 검역 당국으로부터 검역통과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규정된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신고 절차를 완료

○ 수입 딸기에 대한 식품 검역 규정

- 딸기 검역을 받기 전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함
- 수출국에서 발급한 식품안전 기준에 대한 검역 증명서를 제출함
- 검역 인증 소요기간 : 3~5일 (관행상 1~3일 소요되는 경우도 많음)

○ 수입 딸기 검역에 필요한 서류

- 상업 송장, 포장 목록, 선적 선하증권
- 수출국 검역 증명서

○ 식품 안전에 대한 규정

- 베트남 정부는 식품 위생과 안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이에 대한 문제를 의회에서 55/2010/QH12 식품안전 위생법을 제정하여 합법화 함
- 법률 제정 이후 정부, 농업 및 농촌 개발부, 보건부가 식품 안전과 위생과 관련한 여러 조례를 발표함
 - 수입 식품의 품질과 식품 안전 위생에 관한 국가 검역 규정 23/2007/QD-BYT
 - 식품 안전 법률 및 정부 시행령 38/2012/ND-CP
 - 상품 교역에 따른 수출관세, 수입관세 규정 164/2013/TT-BTC
- 현재 베트남에서 딸기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야채, 과일, 차를 위해 규정한 59/2012-TT-BNNPTNT와 안전한 농산물 생산 관리 인증서 (Viet GAP)를 이해하여야 함. 야채, 과일, 차에 관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 관리 인증규정(Viet GAP)이 가장 완벽한 규정 및 규칙으로 보장받고 있고, Global GAP과 Asean GAP을 조합하여 SPS 협정에 따라 규정한 것임. Viet GAP 표준에 따라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규정은 식품 안전 위생, 노동자의 안전, 환경 보호, 근원 추적의 4가지가 기준의 기반이나, 지금까지 Viet GAP 증명서를 발급받은 단체나 개인이 적으며, 고급 대형 슈퍼마켓 등에 입점하거나 물품 공급하기 위해서는 Viet GAP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딸기 수입에 필요한 서류

수출 상품: 라벨 있는 포장 딸기		
수입 때 필요한 서류	제조국	비고
1. 수출 국가 식품 검역 증명서 2. 상품 설명을 위한 전체 사진, 샘플 이미지 3. 상품의 성분 분석표 4. 수출국에서 자유 유통 증명서 5. HACCP/ISO 기준을 달성하는 증명서 6. 검사하기 위해 샘플 제공 7. 원산지 증명서 8. 판매 계약서, 송장, 포장 목록		
진행 수속	수입국	비고
1. 검사하기 위한 샘플 접수 2. 식품 안전 위생국에서 상품을 설명하는 수속 3. 통관 수속, 검사 수속 4. 식품 검역	베트남	

2. HS코드, 관세

○ 딸기 수입코드(HS 코드) : 0810.10.00

○ 관세

- 한국에서 수입하는 딸기의 경우 2015년 5월 5일 체결한 한-베트남 FTA 협정에 의한 관세기준에 따라 수입관세가 0%임
- 베트남의 국별 딸기 수입관세

수입국	HS 코드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비 고
한국	0810.10.00	0	10	식품검역 필요
태국	0810.10.00	0	10	상동
일본	0810.10.00	4	10	상동
호주, 뉴질랜드	0810.10.00	5	10	상동
인도	0810.10.00	7.5	10	상동

1. 유제품 수입가능 여부 조회 및 함유량별 HS 코드

○ 현재 베트남은 유제품을 한국 또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데 있어 국가 간의 MOU는 필요하지 않고 직수입이 가능함

○ 함유량별 HS코드는 아래와 같음

HS 코드	제품	세율
04. 01	순수 우유와 크림	15%
0401. 10	1% 초과하지 않을시	15%
0401. 10.10	액체	15%
0401. 10.90	기타	15%
0401. 20	1%초과 6%	
0401. 20.10	액체	15%
0401. 20.90	기타	15%
0401. 40	6%초과 10%	
0401. 40.10	액체우유	15%
0401. 40.20	유제품	15%
0401. 40.90	기타	15%
0401. 50	10%이상 초과	
0401. 50.10	액체	15%
040. 90	기타	15%
2202. 90.10	저온살균(신선우유)	30%
2202. 90.20	두유	30%

2. 건조 표고버섯 베트남 수출시, 통관 자문

○ 수출 관련 필요서류

- 매매계약서 혹은 주문서 (1부)
- 송장, 패킹 리스트 (각각 원본 1부, 사본 2부)
- B/L 혹은 AWB (원본 혹은 TLX)
- 식품위생검사 증명서 (origin - 생산국)

○ 통관절차 : 서류상 문제가 없을 시 약 영업일 3일 소요

- 1)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사 요청서 제출 (영업일 1일 소요)
- 2) E-Declaration 통관 (세금 납부)
- 3) 필요 시 통관 검사
- 4) 소비자 창고로 배송

○ 해당품목 관세율

- C/O 제출 시 0% (ASEAN-Korea Form)
- C/O 미제출 시 30% (ASEAN-Korea Form)
- VAT 5%

○ 부대비용 : 식품위생검사 비용, 통관비용, 트럭운송비 등